

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14년 12월 1일

나. 회부일자 : 2014년 12월 2일

3. 제안이유

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상의 불필요 및 중복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명 변경

○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→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지원 조례

나. 불필요 및 중복 조문 정비

○ 법인격 및 명칭 삭제(안 제2조)

○ 사무소 및 정관 삭제(안 제3조, 제4조)

- 목적, 운영비 지원, 공유재산 사용에서 설립 문구 삭제  
(안 제1조, 제7조, 제8조)
-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→ 「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(안 제10조)

## 5. 검토내용

### 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2001년 제정된 본 조례는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를 활성화시켜 보건 산업을 육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재단의 설립운영과 지원을 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였으나,
- 현재 재단은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 중으로,
- 조례 내용 중 설립운영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, 지원에 관한 부분만 존속시키기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### 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「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1조 및 제3조에 따라 재단설립을 완료하였으며('00.12.15.), 「민법」 제32조, 제33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비영리 법인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음.
- 입법예고('14.10.20.~11.9.)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문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라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였음.

## 6. 검토의견

「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을 검토한 바, 관련규정에 의거 설립하여 운영 중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바이오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한 충청북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